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3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이정헌・김우영・정동영

박선원 • 박민규 • 박홍배

조인철 • 허성무 • 민병덕

김교흥 · 김 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 개발·활용
-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 4. 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신 설>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u>5.</u> ~ <u>13.</u> (생 략) <u>6.</u> ~ <u>14.</u> (현행 제5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 보화 기본법 .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신 설></u>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u><신 설></u>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
	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u>촉진</u>
<u> <신 설></u>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u> <신 설></u>	4. 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u><신 설></u>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u>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u>
<u> <신 설></u>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
	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위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